##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김희국·김석기·권명호

하영제・金炳旭・김정재

강기윤 · 김용판 · 김형동

김상훈 · 강대식 · 추경호

최승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강요의 금지) 발주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한 발주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8조의4(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 대한 강요의 금지) 발주자
	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
	정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3의2.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수</u>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
	<u>요한 발주자</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